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4585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변론 종결**2023. 2. 10.

**판결 선고**2023. 7.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21년 제1405호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70,259,3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21. 10. 6. 전라남도 영암교육청이 발주한 F유치원 본관동 후면 외벽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28,060,990원에 낙찰받았다.

나. (1)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5744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 'C은 원고에게 48,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4.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574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채3311호로 C의 전라남도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원고의 청구금액인 70,259,38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11. 10.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다. (1) 한편, C은 2021. 10. 8.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21. 10. 13.까지 이를 일시불로 상환하겠으며(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21년 제140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채62754호로 C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의 청구금액인 250,311,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10. 25. 전라남도에, 2021. 10. 28. C에 각 송달되었다.

라. 전라남도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금322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169,627,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에서, 집행법원은 2022. 4. 7. 배당기일에 공탁금(169,627,8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69,588,129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전부권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채62754]에게 169,588,129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9,588,129원 중

70,259,38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2. 4. 1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5396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인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53966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배당이의 청구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로 작성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 청구인바(을 제7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 소는 위 2022가단53966 사건 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중복제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으로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5744 판결의 확정일인 2018. 7. 4.경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464,507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
| 1  | 피고          | 250,311,800 | 갑 제6호증의 1 |
| 2  | 주식회사 H      | 88,541,315  | 2         |
| 3  | I           | 2,816,228   | 3         |
| 4  | 원고          | 70,259,385  | 4         |
| 5  | 주식회사 J      | 28,347,586  | 5         |
| 6  | 주식회사 K      | 6,894,632   | 6         |
| 7  | 주식회사 L      | 8,614,296   | 7         |
| 8  | 주식회사 M      | 9,744,149   | 8         |
| 9  | N           | 21,236,392  | 9         |
| 10 | 주식회사 O      | 11,698,724  | 10        |
| 합계 | 498,464,507 |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21년에 약 4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고, 2021년 C의 재무제표상 자본이 16억 원, 공사미수채권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므로, C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외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로 하여금 C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가 C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C과 피고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70,259,3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춘화**